

직원채용규칙 [1995. 4. 7] [규칙 제1호]

- 일부개정 1996. 7.18 규칙 제25호
- 1998. 1. 5 규칙 제43호
- 1998. 8. 3 규칙 제55호
- 1999. 4. 8 규칙 제66호
- 1999. 6. 4 규칙 제69호
- 1999. 6.16 규칙 제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1. 4.25 규칙 제10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2. 2.14 규칙 제114호
- 2002.12.18 규칙 제124호
- 2003. 4. 1 규칙 제131호
- 2003. 5. 2 규칙 제137호
- 2003. 7.24 규칙 제141호
- 2006. 2.16 규칙 제1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8. 2.22 규칙 제203호
- 2008. 8. 4 규칙 제214호
- 2011.11. 9 규칙 제247호
- 2012. 6. 4 규칙 제259호(위원회 운영규칙)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3.21 규칙 제267호
- 2013.11.11 규칙 제275호
- 전부개정 2014.12.22 규칙 제289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6.12.30 규칙 제313호
- 2019. 1.16. 규칙 제336호
- 2019. 6.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1. 6.18 규칙 제355호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30 규칙 제372호
- 2023. 10. 1 규칙 제37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4. 3. 4 규칙 제387호
- 2024. 6. 27 규칙 제395호
- 2024. 12. 19 규칙 제406호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8. 12 규칙 제4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복무규정 제6조(신규임용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원내 직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장 채용

제3조(채용방법)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

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 할 수 있다.

제4조(모집공고) ①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기관 및 경기도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임용예정 직급
2. 응시 자격
3. 선발 예정 인원
4.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접수방법과 그 기한
9.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의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필요시 경기도 등에 채용전형 중 일부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4.3.4.)

제6조(출제수준) 원장은 적합한 직무역량을 갖춘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직급에 따라 출제수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 2024.3.4.)

제7조(채용계획 등 심의) ① 직원채용전형의 전반적인 사항은 인사복무규정 제61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모집분야, 자격, 인원, 시험의 방법 등)
2. 전형단계별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본조 신설 2024.6.27]

제8조(시험위원 구성 등) ① 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전형, 채점, 논문심사 및 면접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등으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30.)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 및 위원 수는 원장이 정하며, 시험위원 총인원수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6.30.)

1. 경기연구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비상임 이사
3.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4.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동일부서 근무)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6.30.)

제9조(문제채택 및 관리)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문제의 채택은 원장이 행하며,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0조(시험감독 등) ① 필기시험을 감독하기 위하여 원장은 시험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험감독의 임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관계가 없는 신분 이 확실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한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시험감독자 외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등 기타 시험종사자는 [별표 2] 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내부감사인 입회 및 참관)

전형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부 감사인은 연구원에서 지정한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장이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6.30.]

제11조(채용자료보관)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2조(시험과목별 배점) 서류전형, 논문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각 시험별 구성 비율 및 평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의2(가산점) ① 직원 채용시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가 신규채용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한다.

1. 가산점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적용한다.
2.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직렬(분야)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직렬(분야)별 전체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3. 가산점 대상자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재직증명서 등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4.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다.

③ 기타 상기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새터민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은 내부방침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②항과 ③항에 따른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13조(합격자 선정) ① 합격자는 제7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4.12.19.)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③ 제2항의 예비합격자 명단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4.12.19.)

제14조(채용서류제출)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채용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원장은 공개채용시험 실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3]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위원, 출제채점위원, 논문심사위원, 연구발표심사위원 및 면접위원
2. 시험감독 등

제16조(응시자 실비보상) 원장은 채용전형 응시자에게 여비지급규칙 제10조[별표1]에 해당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④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4.6.27.]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구제) ①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할 수 있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제19조(신규채용직원의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30.]

제20조(채용비위자의 보직제한) 원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인 경우 3년, 정직 미만인 경우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3.6.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 4. 7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전에 창설요원등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96. 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전형위원수당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형위원수당지급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1)

부 칙(201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6.7.18, 98.1.5, 99.4.8, 99.6.4, 2002.2.14, 2002.12.18, 2006.2.16., 2008.8.4., 2013.3.21., 2014.12.22., 2016.12.30., 2019.1.16., 2019.6.11., 2023.6.1., 2023.10.1., 2024.3.4., 2025.6.30.)

시 험 방 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서류전형	면 접	-
연 구 직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 접
행정직	신입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 접
	경력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공무직	연구원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 접
	행정원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 접

[별표 2] (개정 2015.4.7., 2023.6.30.)

서 약 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 보안각서 -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 채용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접전형) 심사를 행함에 있어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사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는 법적인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응시자와 제척사유 유무

제척사유	있음	없음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공동연구수행, 논문공동저자,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 의뢰 유무		

● 담당자로부터 상기 유의사항 및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받지않음 받음

2 . . .

위 서약자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별표 3] (개정 2021.6.18.)

수 당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수 당 별	수 당 액	비 고
출제 수당	100,000 ~ 200,000	
채점 수당	100,000 ~ 200,000	
면접심사 수당	100,000 ~ 200,000	
논문심사 수당	100,000 ~ 200,000	
시험감독 수당	100,000 ~ 200,000	
서류심사 수당	100,000 ~ 200,000	

※ 2시간 또는 30명 초과시 50%를 증액하여 지급할수 있음

[별표 4] (신설 2016.12.30.)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채용 가산점

구 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6.27.)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채 용 명 :

응시분야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경기연구원의 채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 (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장 귀하